

# 보고사항

제276회제 1차행정소방위원회

2008년12 월 일 월10:30

## 1.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

- 제출근거 :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
- 제출일자 : 2008.11.19
- 연차보고서 : 별책

## 2.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 제출

- 제출근거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
- 제출일자 : 2008.11.21(자치행정과-4860)
- 개정내용 : 별첨

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내용

## 1 공포·시행일

○2008. 11. 21(충청북도규칙 제2618호) ※일부개정

## 2 개정사유

- 충북과학대학교 교명변경에 따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(08.11.1)되어 관련내용을 조례와 일치시키고, 지시사항 사무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

## 3 주요개정내용

- **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** : 충북과학대학 → 충북도립대학
  - 대학 설립주체를 명시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률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“충북과학대학”에서 “충북도립대학”으로 교명 변경
- **지시사항관련 사무분장 조정** : 성과관리담당관 → 정책기획관
  - 각종 지시사항 처리절차 및 이행체계 확립을 위하여 성과관리담당관에서 정책기획관으로 업무이관
- **재해구호관련 사무분장 조정** : 재난관리과 → 복지정책과
  - 재해구호업무의 원활한 업무연계성 확보, 일관성·효율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업무이관
- **타 규칙 개정** : 「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규칙」 외 1건

## 4 의안전문

- 붙임내용 참조

**붙임**

충청북도규칙 제2618호

##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. 대통령·국무총리·도지사 지시사항 관리

제6조제6항 중 제1호를 삭제하고, 제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한다.

제10조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31호까지로 한다.

제12조제4항 중 제5호부터 제22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해구호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(재해구호법 제4조제1항제1호, 제2호, 제6호, 제7호)

제3장 제1절의 제목 및 제15조제1항 중 “충북과학대학”을 각각 “충북도립대학”으로 한다.

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충청북도 관용차량 관리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배정대상란 중 “충북과학대학장”을 “충북도립대학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충청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의 정책기획관실 사무명란 및 별표 2의 제목 중 “충북과학대학”을 각각 “충북도립대학”으로 한다.